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나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나4381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1516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노식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김희진

변론 종결2023. 6. 20.

판결 선고2023. 10. 17.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1516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9. 4. 접수 제54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6호증"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3면 제16, 17행의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제1심판결문 제7면에 첨부된 별지목록의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I"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J"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

판사김형석

별지